

『구미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2년 03월 03일

나. 발 의 자 : 이선우, 김낙관, 김재우, 김춘남, 이지연,
장미경, 홍난이 의원(7인)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03월 08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03월 16일

제2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이 선 우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·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구성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 규정(안 제1조~2조)
-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시행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(안 제4~5조)
- 피해자 보호·지원 사업(안 제6조)
- 재정지원(안 제7조)
- 교육 및 홍보(안 제8조)
- 2차 피해 방지(안 제9조)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등

○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

(예상 비용이 연 1억 원 미만으로 추정)

○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2. 03. 04. ~ 03. 11.) 결과 의견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차 병

○ 본 조례안은

- 파급력이 높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으로 인해 오랜 시간 지속되는 피해자의 고통 경감을 목적으로 시 차원의 지원을 추가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상위법인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제정된 조례로 상위법에 위배 사항이 없으며,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, 법률 및 의료지원,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복귀에 일조할 수 있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